

별첨 서울특별시 청소원복 제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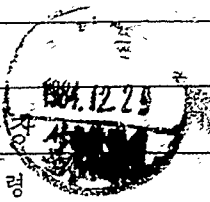
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제 3 안)

수 신 : 청소과장



제 목 : 훈령 발령

서울특별시 청소원복 제규정

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발령

6-2

1. 제정 이유

당시 소속 청소원이 작업할 때에 착용하는 복제를 하계.

동계로 구분 규정함으로써 청소원의 품위 유지 및 건강한

작업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규정을 제정코자함.

2. 주요 골자

0. 청소원 복제 구분 규정 (안제3조)

- 하계복-작업복, 작업화, 안전조끼, 우의
- 동계복-작업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
- 제복의 색상, 모양은 시장이 별도 정함(안제6조)

0. 착용기간 규정

- 하 계 : 6.1-10.31
- 동 계 : 11.1-다음해 5.31

서울특별시 청소원복재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 84 년 12 월 28 일

서울특별시 시장 *김보현*

서울특별시 청소원 복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청소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규정에서 "청소원 복장" 이라함은 청소원이 작업할 때에 착용할 작업복(하동복), 작업화, 안전조끼, 우의, 방한모, 방한장갑, 방한복, 방한화를 말한다.

제3조 (복제) 청소원의 복제는 다음과 같다.

1. 제복은 하계복과 동계복으로 구분하되 하계복은 작업복(하복), 작업화, 안전조끼, 우의로하며, 동계복은 작업복(동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으로 한다.
2. 제복의 색상, 모양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따로 정한다.

제4조 (착용수칙) 청소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원복을 착용하여야하며, 복장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외규정) 특정지역의 청소 또는 작업여건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6조 (제복의 착용기간) 1) 제복은 하계와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계복과 동계복을 착용한다.

2) 제1항의 하계는 6월1일부터 10월31까지로 하고 동계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31까지로 한다.

3) 시장은 기후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

회

이 규정을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